

# 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

제정 1999. 8. 28.  
개정 2000. 2. 29.  
개정 2002. 10. 16.  
개정 2003. 12. 17.  
개정 2007. 8. 24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43조에 의하여 정보과학대학원(이하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

제2조(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) ①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정보과학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과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

②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
2. 각종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
5. 공개강좌 및 연구생과정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6. 대학 및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
7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8. 장학금·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
9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.

제4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입 학

제5조(선발시기)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시마다 공고한다.

제6조(전공별 모집정원) 각 전공별 학생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도교수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

제7조(입학지원 서류)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지원서류는 매 모집시에 모집요강에 정한다.

제8조(입학시험) ①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과목 입학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
2.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

②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는 각 전공에서 정하는 전공교과목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는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, 적성,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하며 평가는 A, B, C, D로 하되 C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면접위원 3명중 2명이 어느 한 항목에 대해 D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
④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각 교과목별로,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의 전형위원은 각 전공별로 각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특별전형) ①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형 비율, 대상자의 자격기준, 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합격자 결정)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확정·발표한다.

제11조(입학등록) ①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정 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

1.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
2. 서약서 및 신상기록카드(소정양식) 각 1부.
3. 학사학위등록증명서 1부.
4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.

#### 제4장 교육과정·개강교과목·수강신청·선수교과목·학점교류 및 성적평가

제12조(교육과정 편성) ①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논문연구 및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며 교과목별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.

②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

제13조(개강교과목)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한 개강과목을 매 학기말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·공고한다.

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학기 1강좌만을 개강한다.

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·전임강사가 담당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에 있는 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④ 각 전공의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(논문연구 제외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논문연구는 제3학기부터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
제14조(수강신청 및 교과이수)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내에 전공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은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.

제15조(폐강) 교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인 교과목은 개강하지 아니한다. 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 수 있다.

제16조(선수교과목) ① 각 전공별 선수교과목의 이 대학교 학과(학부, 전공)의 전공 교과목중에서 전공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② 선수교과목은 교과목당 성적등급이 B이상이어야 이수로 인정한다.

③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수교과목을 따로 개설할 수 있으며, 이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

제17조(학점의 교류 및 인정) ①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기간중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, 총 6학점 이내로 이를 인정한다.

③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대학원의 재학 최종 학기말부터 5년이내로 입학한 자이어야 하며, 등록은 2학기까지 하여야 한다.

④ 대학원장은 이 대학교 다른 대학원장 및 다른 대학교의 총장의 추천을 받은 다른 대학원생에 대하여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학생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18조(재이수) 이미 취득한 교과목중 그 성적등급이 C<sup>+</sup> 이하인 경우에는 재 이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 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.

제19조(성적평가) ①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시험과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.

② 시험은 매학기의 종료시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연구보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작성하되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지도교수, 논문지도위원회

제20조(지도교수) ①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지도, 논문지도,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하며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수는 매 학년 3인 이내로 한다. “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

③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21조(논문지도위원회)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공주임와의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#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

제22조(시험시기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.

제23조(시험위원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의 출제위원의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한다.

제24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학문영역의 성질에 따라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.

② 외국어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25조(종합시험) ①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되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

② 종합시험은 18학점(성적 평균등급 B<sup>o</sup>)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

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26조(재시험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##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

제27조(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) 학위청구논문(이하“학위논문”이라 한다)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8조(논문작성계획서 제출)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2개 학기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4학기 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연구(3학점)를 논문제출 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평균등급이 B. 이상인 자
2. 논문 제출 1년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
3.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제30조(학위논문 제출시기)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제출시기, 심사료, 제출서류, 심사일정 등을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학위논문 작성)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방법에 따른다.

제32조(학위논문 제출 부수)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원서와 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, 공개발표용 논문요지 및 심사용 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자는 완성논문 12부(하드표지 2부 포함), 전자논문 디스켓 2매를 학위수여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3조(학위논문심사위원회)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위촉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. 다만 질병·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.

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. 다만,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,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34조(학위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 주관하에 반드시 1회 이상 논문공개 발표회를 거친 후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
② 논문심사는 초심(구술시험 병행)과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초심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의 수정보완 여부의 확인을 종심으로 한다.

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평가한다.

④ 논문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5조(학위논문 공개발표) ①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각 전공별로 실시하되, 해당 전공 교수와 소속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.

② 공개 발표 후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 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공개발표용 논문요지는 A<sub>4</sub>판 인쇄물로 작성한다.

제36조(학위논문 판정) ① 학위논문 심사는 “가” 또는 “부”로 판정한다.

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“가” 판정이 있어야 한다.

제37조(구술시험)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.

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③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)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결과 및 구술시험 성적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

제39조(학위수여) ①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29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(개정 2007. 8. 24)

1.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

2. 수료에 의한 학점이외에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
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별지제1호> 서식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별지제2호>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. (개정 2007. 8. 24)

제40조(수료인정)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<별지제3호>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 (개정 2007. 8. 24)

### 제9장 장학금 등

제41조(장학금 등)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을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 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

2. 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사운영규정

### 부 칙(2000. 2. 29)

이 규정은 2000. 3. 1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02. 10. 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07. 8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제1항제2호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석 제 호

## 학 위 기

성 명:

주민등록번호: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○○석사(○○학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논문 :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석사(○○학)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총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학위등록번호 : 순천대 (석) ○ ○ ○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  
주민등록번호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  
하고 소정의 심사에 통과되어 ○○석사(○○학)의 자격을  
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석사(○○학)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총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학위등록번호 : 순천대 (석) ○ ○ ○

제 호

## 수료증서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○○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총장(학위) ○ ○ ○ (인)